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5. 27. 김성희 의원 외 10인

나. 회부일자: 2021. 5. 27.

다. 상정일자: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1.6.1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김성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절감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장려하고 반면 예산 낭비사례는 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2) 공개대상·공개시기 및 방법 (안 제2조~안 제3조)
- 3)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 (안 제4조)
- 4) 예산낭비 등 심사 (안 제5조)
- 5)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안 제6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김성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7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¹⁾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 절감에 대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마포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
- 이와 같이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있고 마포구의 재정운용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를 공개하며, 아울러 예산 절감이나 제도개선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성과금 등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구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제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참고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²⁾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입안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 제2조와 제3조**는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구청장이 예산과 관련 공개해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를 보면 주민의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와 제안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사례집을 발간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 **안 제4조**는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써 예산·기금의 부적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접수·처리를 위해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동 신고센터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5조**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에 따른 심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함.
- 이와 같이 살펴보건데 동 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한 기존의 주민감시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의의는 크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의 신고 또는 제안방식으로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바, 모바일 앱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구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³⁾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54조의3에 따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3) 행정안전부훈령 제161호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신청)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접수)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처리기관미지정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처리)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들어온 지방예산 낭비신고 등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방예산낭비신고등의재분류등의절차) ① 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